(개인고객용)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약관-109호(2026.11.04)

기부이체 서비스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기부이체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고 합니다)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 이라 합니다)과 은행이 제공하는 기부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고객 (이하 "납부자" 라 합니다)간의 기부이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기부이체 서비스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예금거래 기본약관』,『자동계좌이체 약관』,『적립식예금 약관』,『거치식예금 약관』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 및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기부이체 서비스"란 "은행"이 이 약관 제5조에서 정한 예적금상품의 만기이자 또는 원리금으로 "기부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종교기관, 학교 중 "납부자"가 희망하는 종교기관, 학교에 이체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기부금 서비스" 란 "은행"에 서면으로 기부금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낙을 득한 종교기관, 학교가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납부자"로부터 기부금을 수납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납부자"란 이 약관에 의하여 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는 기부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의미합니다.
4. "기부처" 란 은행의 "기부금 서비스"를 이용 중인 종교기관, 학교 중 "납부자"가 기부하고자 하는 종교기관, 학교를 의미합니다.

제4조 (이용대상)
기부이체 서비스는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제5조 (기부이체 서비스 이용가능 예금)
① 기부이체 서비스 등록 가능 계좌는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예적금 상품 중 은행이 정한 상품 (이하 "대상 상품"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상상품의 지정 또는 변경은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제6조 (기부이체 서비스 내용 및 요건)

① 기부이체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만기 시 이자 전액기부
   2. 만기 시 이자와 원금 전액기부

② 기부이체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이체 처리됩니다.

1. 예적금의 만기해지
2. 예적금의 만기 후 해지

제7조 (수수료)

기부이체 서비스와 관련하여 "납부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8조 (기부이체 서비스 신규, 변경, 해지)

① "납부자"는 기부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은행이 정한 양식에 따른 서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함과 동시에 기부이체 서비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납부자"는 기부이체 서비스를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은행이 정한 양식에 따른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신청하고, 은행의 변경 또는 해지 처리 완료시 변경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기부이체 서비스의 신규 신청, 변경, 해지는 대상상품의 해지 전까지 가능합니다.

제9조 (이자소득의 귀속)

이자금액은 이자소득 원천징수 후 기부처에 입금되며 이자소득은 대상상품의 예금주에게 귀속됩니다.

제10조 (기부이체 서비스 임의해지)

① "납부자" 가 가입한 대상상품 계좌의 중도 해지 시 기부이체 서비스는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처 계좌의 부재, 해지 등의 사유로 입금 불가한 경우 은행은 기부이체 서비스를 임의로 해지하여, 해지원금 및 이자를 "납부자"명의 입출금계좌로 전액 입금합니다. 단, 이 경우 은행은 문자,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납부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 (기부이체 서비스 처리결과 통지)

① "은행"은 기부이체 서비스 처리 결과를 즉시 통지합니다.

② "납부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납부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 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납부자"는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 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전의 영업일까지 "기부금 서비스" 를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기부이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납부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조정은 은행과 납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2.09.15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6년 12월 9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